

## 경운대학교 학교기업설립및운영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기업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(대통령령 제18327호)에 따라 경운대학교 (이하 "우리대학교"라 한다) 학교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우리대학교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소재지)**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대학설립·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시설안 및 대학설립·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안으로 한다.

**제4조(주관부서)** 학교기업에 관한 제반 업무의 주관 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고,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학교기업의 설립 및 폐지
2. 학교기업의 운영 지원 및 관리
3. 학교기업의 평가
4. 기타 학교기업에 관한 제반 사항

**제5조(설립신청)** ① 학교기업 설립 부서는 각 학부 및 학과(전공) 또는 부속기관, 연구소(이하 "설립부서"라 한다)로 한다.

② 설립 부서가 학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을 설립·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학교기업의 소재지(현재 운영중인 장소 및 활용할 장소)
2. 사업종목
3. 관련학부·학과(전공) 또는 교육과정
4. 담당직원
5. 재정투자계획
6. 시설·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
7. 학생현장실습 활용계획
8. 수입창출계획 및 사업성 전망
9. 학교의 투자예산 방법
10. 기타 학교기업 발전계획

③ 설립 부서는 학교기업의 설립·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소속 학생 및 교원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④ 설립 부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이 포함된 학교기업 설립계획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설립승인)** 총장은 학교기업 설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

처 학칙에 해당 학교기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교기업을 설립한다.

**제7조(관리책임자)** 총장은 학교기업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, 이때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교기업의 폐지 신청
2. 학교기업의 운영 및 사업보고
3. 학교기업의 종업원 관리
4. 기타 학교기업의 유지 및 관리

**제8조(운영세칙)** ① 개별 학교기업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기업 운영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.

1. 학교기업 명칭 및 관리책임자
2. 목적 및 사업
3. 종업원에 관한 사항
4. 회의에 관한 사항
5. 재정투자계획 및 수익창출계획에 관한 사항
6. 시설·설비 및 운영방법
7.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
8. 회계에 관한 사항
9. 폐지에 관한 사항

② 운영세칙 제정 시 위 제①항9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주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설치·운영비 지출범위)** 총장은 우리대학교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.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우리대학교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교내에 설립된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
2. 학교기업 관련 학부·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
3. 학교기업 관련직원 및 학생의 수

**제10조(현장실습산업체로의 선정)** ① 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.

② 총장은 학교기업의 시설·설비,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,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,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기 7일 전까지 총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)** ① 총장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·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,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대학의 학점·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학점·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·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정도를 정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예산)** ① 관리책임자는 우리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라 대학과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예산편성·집행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“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”에 따른다.

**제13조(회계처리)** ① 관리책임자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"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"에 따른다.

**제14조(보상금)** ① 관리책임자는 학교기업의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교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.

② 위 ①항의 보상금 및 장학금 지급은 관리책임자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**제15조(감사)** 총장은 학교기업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, 감사는 매년 1회 정기감사와 필요시 수시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회계보고)** 학교기업의 관리책임자는 분기별 사업실적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총장은 회계연도종료 후 재무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폐지)** 총장은 학교기업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우리대학교에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학교기업을 폐지 할 수 있다.

**제18조(재산의 귀속)**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재산은 우리대학교에 귀속한다.

**제19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지 제1호서식】

## 경운대학교 ○○○학교기업 설립계획서

소 속		성 명 (주관자)	
소 재 지	※ 현재 운용중인 장소 및 활용할 장소 기재	연 락 처	전화 : H P :
사업종목	※한국표준산업분류참조		
관련학부, 학과(전공), 교육과정과 연계			
사업목적			
사업분야 및 사업내용			
전공연계성 및 교수, 학생 현장실무 활용방안			
시설·설비, 기자재확충 계획 및 운용방법			

사업성전망 및 수익창출 계획	
재정투자 및 학교투자계획	
담당직원현황	
기타 학교기업 발전계획	
<p>상기와 같이 학교기업설립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>※추진과정 협의 관련부서 회의록 1부 제출</p> <p>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>신 청 인 :           (인)</p> <p>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</p>	

※ 양식이 부족할 시 별지 작성 요망